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매수로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 발행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거나 의결권 있는 주식 발행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추가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수를 공제한 주식 수(최소매수주식수) 이상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되,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의2 신설).
- 의무공개매수 시 응모한 주식 수가 최소매수주식수를 초과하면 안분 비례하여, 응모한 주식 수가 최소매수주식수에 미달하면 응모한 주식 전부를 매수하고, 과거 매수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함(안 제141조).
- 의무공개매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매수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그 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5조).

- 의무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금지에 대한 위반, 의무공개매수 의무 및 관련 절차의 위반 등에 대하여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9조, 제444조 및 제445조).

II. 검토의견

1. 전환사채등에 의한 의무공개매수 시 최소매수주식수 계산방법 명확화(안 제133조의2제2항)

개정안은 주식양수도 방식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취득 시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적대적인 인수·합병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자 주식인수 주체에게 일정 수 이상의 주식, 즉 최소매수주식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할 것을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안 제133조의2제2항은 주식의 매수, 교환 등 주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려는 때에도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적용하려는 내용인데, 주식의 매수, 교환 등 주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와 다르게 주식인수 주체가 공개매수해야 하는 최소매수주식수를 계산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안 제133조의2제2항 후단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1을 더한 주식 수에서 전환사채등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한 직후의 보유 주식 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최소매수주식수를 계산하도록 의무 공개매수 사례에 맞추어 법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33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생 략) ② 주권상장법인의 <u>전환사채권</u>, 신주 인수권부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u>전환사채권등</u>”이라 한다)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전환사채권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매수등으로 본다.</u> ③ (생 략)	제133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생 략) ② 주권상장법인의 <u>전환사채</u>, 신주인수권부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u>전환사채등</u>”이라 한다)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전환사채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은 선행매수 또는 제1항제2호의 매수등으로 보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최소매수주식수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등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한 직후의 보유 주식 수를 공제한다.</u> ③ (생 략)

2. 의무공개매수의 적용제외 사례 명확화(안 제133조의2제3항)

안 제133조의2제3항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적용받지 않은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 기업의 주식 매수등, ②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법인의 주식 매수등, ③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여기에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개정안에 따른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발행주식총수의 25% 취득(보유)을 기준으로 100분에 50에 1주를 더한 주식수까지는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입법 취지에 맞추어 강제매수 주식수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의무공개매수 주식에 해당될 수 없는 논리적 해석에 따른 것임.

다만, 개정안은 의무공개매수 대상인 주식 취득과,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주식 취득 간의 논리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무공개매수제도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입법취지 및 논리적 해석론을 고려하여 안 제133조의2제3항제3호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명확히 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33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가 그 주식의 매수등을 하려는 경우 4. (생략)	제133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가 그 주식의 매수등을 하려는 경우 4. (생략)

3. 기타 사항

그 밖에 이 법 및 「상법」 등 관련 법률의 표현을 고려할 때, ‘전환사채권’을 ‘전환사채’로 수정하는 등의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정희)